

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(이하 “IFRS17”) 기반의 용어 정의(안 제13조, 제29조, 제30조, 제36조, 제41조, 별지 1호서식(2), 별지 제14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IFRS17 시행에 따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회계 용어를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## 2.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(제44조, 제45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·복잡성이 증가하나, 선임계리사의 책임성·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·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록 절차를 강화
- 또한,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,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선임계리사의 권한, 선임 및 해임 절차 등을 강화하여 선임계리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